

1. 개정이유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대신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9873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되고, 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양도·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권리양도·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국유림법이 개정(법률 제20079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권리양도·명의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국유림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국유림위원회 심의사항이 국유림법 시행령에 상항 규정됨에 따라 중복 내용 삭제(현행 제4조 삭제)
- 나. 분할형 매매대금 지급을 경영임지에도 적용하고, 매도자가 일시형 또는 분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삭제(안 제19조)
- 다. 임도 설치를 위해 국유림 대부 등을 신청할 때 임도설계도서로 실측도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3조제1항제2호, 제12호서식)
- 라. 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양도·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

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유림법이 개정됨에 따라 권리양
도·명의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안 제25조, 제16호서식)

마.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8064호, 2017. 5. 29. 공포, 2017.

6. 3. 시행) 시 누락된 인용조문 정비(안 별표 2)

바. 국유림법 개정으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 체납 시 연체금 이율이 완화
됨에 따라 대부계약서 및 사용허가서 서식 정비(안 제13호서식, 제14
호서식)

사. 국유림 매수·매각, 대부등은 그 실질이 부동산 매매·임대차이므로
계약 시 본인 확인이 중요하나 관련 서식에서 ‘생년월일’만 기재하도
록 하고 있어,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
록 서식 정비(안 제7호서식, 제9호부터 제16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7. ~ 6. 17.)

3) 행정규제 : 규제비대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실측도 또는 축척 1천200분의 1 구분구적도”를 “실측도”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측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에 따라 국유림”을 “국유림”으로, “받은 자가 그 권리”를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그 권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위해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서 사본을 포함한다.

별표 2 제10호가목 단서 중 “다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매매계약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매매대금							
계약보증금							
매매대금 지급방법	[]일시지급	지급금		지급일		지급방식	
	[]분할지급	지급금	분할 지급 기간	지급회차	지급일	지급방식	
	매매대상 공유림 (사유림) 및 그 밖의 토지 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매매면적 (㎡)	비고

위 매매대상 공유림 등에 대해 매수인과 매도인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은 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뒤쪽의 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매수인 인

수탁자 인

매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직위·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첨부서류	1.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 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 매매대금의 분할 지급에 관한 약정서 1부(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작성방법
1. 매매대금 지급방법란의 “일시지급”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 기재하고, “분할지급”은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2. 수탁자는 매수인이 매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제1조 이 계약의 목적물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 및 그 밖의 토지(이하 “매매대상 공유림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매매대금은 매매대상 공유림등에 대한 총평가액으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며, 그 밖의 분할 지급에 관한 사항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별도로 체결하는 약정에 따른다.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1회(총 120회) 분할 지급한다.

2.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회차별 분할 지급금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회차 분할 지급금: 매매대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매매대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간 매월 1회(총 120회)로 나눈 금액(이하 “월별분할지급금”이라 한다)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

나. 2회차 이후의 분할 지급금: 월별분할지급금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매년 공고하는 이자율 및 지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제4조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매매대금(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1회차 분할 지급금을 말한다. 이하 제5조에서도 같다) 지급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매매대상 공유림등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등 물권적 권리(대항력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의 말소

2. 매매대상 공유림등에 관한 공과금 등의 변제

제5조 ① “매도인”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매매대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매도인”이 등기된 입목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청구를 할 때 입목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매수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제6조 매매대상 공유림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7조 “매도인”은 승낙 없이는 이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도인”이 법령이나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의 이행 전에 사정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

제9조 이 계약에 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석에 따른다.

제10조 “매도인”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국유림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앞쪽)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금 원에 매각한다.

제2조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원을 계약체결일에 “매도자”에게 납부한다.

②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제3조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 원을
 년 월 일까지 “매도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산정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해야 한다.

제4조 “매수자”는 이 계약에 따라 매수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매수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전대 또는 양도
2.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3.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4. 개간, 입목·죽의 벌채 그 밖의 일체의 처분

제5조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매도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연체료를 포함한다)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4조를 위반한 경우(사용인, 고용인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3. 부실한 서류의 제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반하여 매수한 경우
6. 그 밖에 산림관계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조 ① 이 계약이 제5조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는 “매수자”는 제2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매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매수자”가 매수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대부로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매수자”에게 반환한다.

제7조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연체료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매수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받고, 그 이전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8조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의 확정지 지정에 따라 매수재산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이를 정산한다.

제9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매도자” 소재지의 각급법원으로 한다.

제10조 “매수자”는 이 계약체결 이후에 매수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는 매수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하는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 이 계약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매도자”의 해석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도자와 매수자는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처분청

인

매수자

성명

인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직위·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국유림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전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앞쪽)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금 원에 매각한다.

제2조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원을 계약체결일에 “매도자”에게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한다.

제3조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매도자”에게 납부한다.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한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6%의 이자를 붙여 납부해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매각대금을 내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산정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해야 한다.

④ 매수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함께 내야 한다.

제4조 제2조에 따라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였을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보지 않는다.

제5조 “매수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매수자”는 이 계약에 따라 매수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매수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전대 또는 양도
2.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3.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4. 개간, 입목·죽의 벌채, 그 밖의 일체의 처분

제7조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매도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분납금(연체료를 포함한다) 및 이자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6조를 위반한 경우(사용인, 고용인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3. 부실한 서류의 제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반하여 매수한 경우
6. 그 밖에 산림관계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 ① 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매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매수자”가 매수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대부로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매수자”에게 반환한다.

제9조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연체료 및 이자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매수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받고, 그 이전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0조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의 확정지 지정에 따라 매수재산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이를 정산한다.

제11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매도자” 소재지의 각급법원으로 한다.

제12조 “매수자”는 이 계약체결 이후에 매수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는 매수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하는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이 계약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매도자”의 해석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도자와 매수자는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처분청

인

매수자

성 명

인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직위·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 소

교환계약서

(앞쪽)

교환재산의 표시 및 평가금액						
임야의 구분	소재지	지번	공부면적 (㎡)	교환면적 (㎡)	평가금액 (원)	비고
국유						
공유 또는 사유						

위 토지에 대하여 관리청과 교환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관리청과 교환 상대방은 이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관리청 인

교환 상대방

성 명 (서명 또는 인)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직위·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 소

첨부서류	1. 교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교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 시스템(GPS)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	---

국유림 [] 대부 [] 사용허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직위·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m ²	신청면적 m ²
	용도		대부·사용 구분 [] 유상 [] 무상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비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유림의 []대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첨부서류	1. 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사업계획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에 사업 및 시설물 설치 내용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1부. 다만, 실측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3. 토사유출방지계획서(산지전용 등으로 토사유출방지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	대부계약·사용허가 여부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수목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유림 [] 유상 대부계약서

[] 무상

(앞쪽)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대부면적
			m ²	m ²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간)로 한다.

제3조 대부료는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그 금액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연도마다 산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경쟁입찰에 따른 대부료는 낙찰가액으로 징수한다.

제4조 대부료는 "대부자"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한 대부료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체금을 징수하거나 「국세징수법」 제10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금은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를 취소하고 대부를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2.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대부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않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산물 외의 다른 산물을 취득한 경우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하여 대부지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
7. 대부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착오로 인하여 대부한 경우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대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5조제8호 또는 제9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한 대부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7조 대부기간 만료 후에도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대부자"에게 대부기간 갱신을 요청해야 하며,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8조 "대부받는 자"는 불임 사업계획도의 구분구적에 따라 산지를 전용하고, 그 사업계획도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제9조 "대부받는 자"는 연차별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대부받는 자"가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하여 대부지 안의 입목·죽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제거하려는 입목·죽을 매수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벌채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대부받는 자"(사용인 또는 고용인을 포함한다)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지 안의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 책임을 다해야 하며, 대부지 안의 입목에 손상을 끼쳤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2조 ① "대부받는 자"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따른 산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 그 밖에 산림보호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부기간 만료나 대부취소 등으로 인하여 대부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대부받는 자"는 대부지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응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대부받는 자"(광업용으로 대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는 광재(鑛滓, 제련하고 난 찌꺼기) 또는 폐석(廢石, 쓸모 있는 것을 골라내고 남은 돌)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하여 입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골재로 분류한 수량은 이를 매수한 후 반출해야 한다.

제13조 "대부받는 자"는 대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에 경계 표주를 설치해야 한다. 대부지의 면적이나 구역이 달라졌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대부받는 자"는 대부지 안에 분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호해야 하며, 분묘 신설을 방지해야 한다.

제15조 "대부받는 자"는 대부기간 만료나 대부취소 등으로 인하여 대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정기한까지 대부지 안에 있는 시설물과 공작물 등을 철거하고, 대부지를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다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부자"로부터 제거의무를 면제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대부받는 자"가 대부지 안에서 채취할 수 있는 부산물은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채취할 수 있는 초본류 및 버섯류에 한정한다.

제18조 "대부받는 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이를 "대부자"에게 요청해야 하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자"는 "대부받는 자"에게 과납된 대부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19조 대부받는 자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은 제출하지 않는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자

인

대부받는 자

인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직위·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붙임: 사업계획도 1부

국유림 [] 유상
[] 무상 사용허가서

(앞쪽)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직위·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허가면적(㎡)	
년 월 일 제출한 위 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					
허 가 조 건					
제1조 사용허가목적은 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간)로 한다.					
제3조 사용료는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그 금액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연도마다 산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결정하여 징수한다.					
제4조 사용료는 허가청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체금을 징수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0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금은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사용허가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않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다른 산물을 취득한 경우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하여 사용허가지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					
7.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착오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한 경우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림 [] 권리양도 [] 명의변경 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최초 명의인)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직위·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수인 (변경 명의인)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직위·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m ²	대부(하가)면적 m ²	양도면적 m ²
	대부일·사용허가일 년 월 일	용도	대부·사용허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유					
	권리양도(명의변경)내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양도 []명의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최초명의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변경명의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1부 2. 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위해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양도·양수(명의변경)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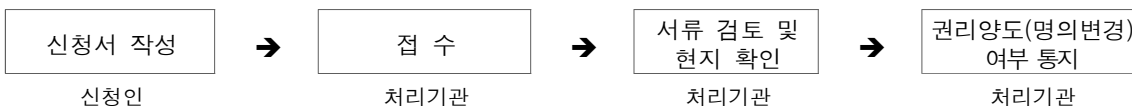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질 차



*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수목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4조(자문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u> <u>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려는 경우.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 1만제곱미터 이상</u> <u>나. 제주특별자치도 및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 3만제곱미터 이상</u> <u>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지역:</u>	<u><삭 제></u>

2. 다른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구·구역 등의 지정을 위하
여 50만제곱미터 이상의 국유
림이 편입되는 경우

3.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국유림
을 광업·스키장 또는 골프장
의 용도로 대부 또는 사용허
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하러거나 사전에 협의하려는
경우

제19조(매수의 방법 등) ① ~ ③
(생략)

④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의 매매대금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유림등의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유림등을 매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생략)

제19조(매수의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단서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

①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사업계획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 또는 축척 1천200분의 1 구분구적도에 사업 및 시설물 설치 내용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1부 <단서 신설>

<신설>

<신설>

제23조(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실측도 -----

-----.

다만, 실측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 표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 표 3의3 제7호에 해당하는

	<u>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 시된 임야도 사본</u>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권리양도·명의변경허가)	제25조(권리양도·명의변경허가)
① <u>법 제25조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변경하 려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 려는 자와 연명(권리자의 사망 으로 인한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자 명의)으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① <u>국유림----- -----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그 권리----- ----- ----- ----- ----- ----- -----.</u>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승계인의 연차별 <u>사업계획서</u> 1부	2. ----- <u>사업계획서</u> (<u>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3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u>) ----- --
3. <u>양도·양수할 자의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u> (<u>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 우는 제외</u>) 각 1부	3. <u>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이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 4호에 해당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에 대 한 권리·의무 승계를 위해 허가·인가·승인·지정·등</u>

4. 그 밖에 제적등본 등 권리승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5. 대부등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③ (생략)	<u>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서 사본을 포함한다.</u> <u><삭 제></u> <u><삭 제></u> ②·③ (현행과 같음)
--	--